

14. 主要土地制度의 改善方向에 關한 討論會(Ⅱ)

主催：國土開發研究院

지난 4월 27일 국토개발연구원이 주최한 주요토지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 내용을 I·II차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개발이익환수제 확대방안

曹 宇 鉉(건설부토지국장)

목 차

1. 검토의 개경
2. 현행 개발부담금제도의 개요 및 운영실태
 - 가. 제도의 목적
 - 나. 제도의 내용
 - 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3. 현행 개발부담금제도의 문제점
4. 현행 개발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
5. 예상 문제점과 대책

1. 검토의 배경

-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제도와 토지초과이득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 개발부담금은 1천평 이상(도시계획구역은 500평)의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동안의 이익만을 환수하고, 토초세는 부과당시의 유휴토지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현재 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부동산투기와 단기적인 지가상승이 우려되는바
 -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완화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음
- 장기적으로 볼때 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이용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2. 현행 개발부담금제도의 개요 및 운용실적

가. 제도의 목적

- 각종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그 재원으로 낙후지역개발과 토지비축에 활용

나. 제도의 내용

- 개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등 28개 유형의 사업으로서 인가된 면적이 1천평(도시계획구역은 500평)이상인 사업
-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 개발이익의 50%(개발이익은 사업 완료시점의 지가에서 착수시점의 지가와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

○ 부과·징수

- 사업완료후 3일이내에 부과하고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물납과 1년 범위내의 연납 또는 분납 인정)

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90. 3. 2~93. 2누계)

○ 부과대상사업 현황

전체	6대 도시	기타 지역
1억 5,348만평 (3,840건)	2,025(13%) (918)	1억 3,323(87%) (2,922)

○ 부과·징수 현황 : 부과(1,603건, 3,439억 원), 징수(969건 1,744억 원)

3. 현행 개발부담금제도의 문제점

- 개발부담금은 사업인가일부터 준공일까지 동안에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어 그 전에 용도지역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환수하지 못함.

※ 용도변경의 경우 지가상승정도(90. 1.1과 92.1.1의 지가차이분석) —

	비도시→도시	도시(보전→개발)	비도시(보전→개발)
(용도변경만)	2.5배	2	2.45
(용도변경 + 개발)	3.5배	2.7	4.2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도시계획구역은 500평이상, 그 외의 지역은 1천평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
- 개발이익의 발생정도가 고려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나고
 -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익을 충분히 환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개발부담금은 절토·성토 등 물리적인 토지개발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건축물등의 건축으로 지목이 변경(예: 잡종지→대지)되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 현재 건축행위로 인한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착수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세시 가표준액으로 부과하여 환수효과가 미흡

※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비교(서초구 사례)

지목변경	과세시가표준액	공시지가
학교용지→대	21.4만원/ m^2 →35만원	91만원→226만원

4. 개발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

-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 토지취득시점(이 법시행전에 취득한 경우는 이 법시행일)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

※ 개발사업시행자는 용도변경전에 토지를 취득할 것이므로 토지취득시점부터 부과.
단, 도중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로 환수

-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와 부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 개발이익의 정도에 따라 6대도시는 200평이상,
– 기타 도시계획구역은 300평이상,
– 비도시계획구역은 현행과 같이 1천평이상으로 함.

※ 지역별 평균 개발이익

6대도시	시·읍급도시	비도시지역
68천원/평	42(62%)	12(18%)

※ 부과대상을 확대할 경우 매년 약 40만평이 부과대상에 추가되어 100~200억원정
도의 개발이익 추가환수 추정

— 도시지역의 개발사업 분포(92년) —

구 분	계	200~299	300~499	500평이상
6 대 도 시	403만평	2.4	2.7	398
기 타 도 시	1,690	19.8	36.1	1,634

- 이와 동시에 건축으로 인한 지가변경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추가

5. 예상 문제점과 대책

- 1) 용도지역변경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A(용도변경)	B(취득)	B(개발착수)	개발완료
개발이익①	개발이익②	개발이익③	

→ A의 개발이익①은 양도소득세로 환수하고 B가 얻은 개발이익 ②와 ③은 개발부담금으로 환수

※ 양도소득세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고 세율도 40~60%

- 2) 이 법시행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소급부과하는 것 아닌가?

→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이 법시행일을 취득시점으로 인정하여 소급부과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

- 3) 미실현이익에 대한 조세저항과 개발손실에 대한 보상요구가 거세지지 않겠는가?

→ • 이 개정내용은 용도변경이 있을 경우 토지보유단계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 용도변경후 개발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개발토지에 한하여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환수하는 것이므로

• 미실현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개발손실에 대한 보상요구가 거세질 우려는 없다고 봄

- 4) 용도변경지역 주변의 지가상승분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 주변지역도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개정전부터 소유하던 토지는 법시행일부터, 개정정후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부과되게 되므로 결국 주변지의 지가상승분도 환수하게 됨.

- 5) 개발사업이 위축되어 적정한 토지이용이 저해되지 않겠는가?

→ • 개정내용대로 할 경우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특혜시비를 해소할 수 있게 되어

•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용도변경이 용이해 짐으로써 개발사업이 오히려 활성화될 것임.

- 실제로 이 제도시행이후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추이

구분	90.3~	91	92
건수	393건	1,032	1,403
면적	1,241만평	2,155	2,509

- 6) 지목변경은 단순한 토지용도의 변경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 광의의 개발개념에는 절토·성토등 물리적인 개발뿐 아니라 토지의 용도의 변경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임.

토지거래허가제의 개선방안

吳 鎮 模(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제도의 개요

2. 현황

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현황

나. 토지거래허가의 처리현황

3. 토지거래허가제의 문제점

가. 허가구역의 과다지정과 장기화로 토지지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

나. 거래규제수단의 다양화로 인한 중복규제

다. 가격심사제를 통한 거래가격의 통제불가능

라. 사후관리의 불가로 제도자체의 실효성을 저하

4. 개선방안

가. 거래규제구역 지정 및 규제방법의 개선

나. 심사기준의 합리화

다. 사후관리의 강화등으로 허가제의 실효성 확보

1. 제도의 개요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건설부장관이 규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계약체결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여 투기적인 토지거래를 방지하고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제도임.

- 행정청은 거래가격의 적정성, 수요자의 적격성, 토지이용 목적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
- 허가제는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므로 토지거래규제의 가장 강력한 수단임.

■ 규제구역의 지정

- 건설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고, 또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규제구역으로 지정함.
- 규제구역이 지정되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의 대상

- 규제구역의 토지에 관한 일정한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임
 - 허가를 받아야 하는 권리는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및 이들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임.
 - 계약의 내용은 이들 권리를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것임
- 규제구역 내에서 일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임
 - 도시계획구역 내는 용도지역별로 81~300평을 초과하는 토지거래임.
 - 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이용현황별로 150~600평을 초과하는 토지거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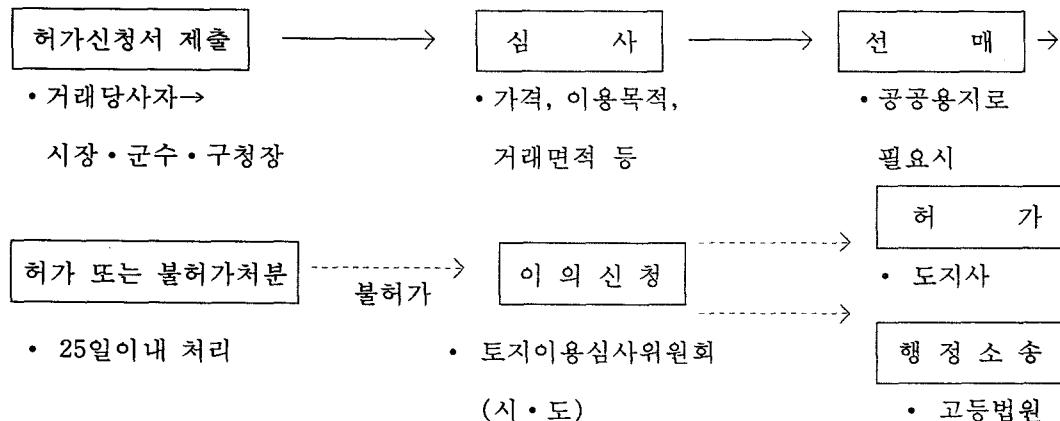
■ 허가의 절차

- 허가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신청서를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함.

- 허가신청서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한뒤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함.
- 도지사는 허가신청 접수일로부터 25일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함.

<허가의 절차>



■ 허가의 기준

도지사는 가격, 이용목적, 면적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

<심사의 기준>

구 분	심 사 방 법
가 격	적정가격(공시지가×120/100+취득관리비)이하 여부
이 용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수요자로서 이용목적의 타당성<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의 주거용 택지, 주민의 복지·편익시설용토지 등으로 실제 필요한 토지인지 여부○ 다른 계획에의 적합여부<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에 저촉여부• 공공시설계획, 주변자연환경보전상 적합여부
면 적	취득면적이 이용목적에 비추어 적합한지 여부

■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

- 효력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거래계약은 무효임
- 등기이전 : 물권변동을 위한 등기신청은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가능함
- 벌칙 : 허가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현황

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현황

- 허가구역은 1985. 8. 5대덕연구단지(27.8km^2)에 처음 지정된 이래 계속 확대되어 1993. 4월 현재 전국토의 46.5%인 $46,107\text{km}^2$ 에 대해 지정되어 있는 실정임.
- 점차 신고구역을 축소하여 규제구역으로 전환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인천, 제주지역은 전지역을 규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 신고구역은 1984년 경기, 충남북지역에서 비롯되어 현재는 전국토의 38%인 $37,736\text{km}^2$ 에 대해 지정되어 있는 실정임.

나. 토지거래허가의 처리현황

- 1992년을 기준으로 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토지거래는 전체 거래중 건수로는 10%, 면적으로 22%정도임.

〈토지거래허가의 실태〉

	전체(A)	허가(B)	비율(B/A)
건 수	89.2만건	8.9만건	10.5%
면적	3.6억평	0.8억평	22.0%

- 총허가신청건수중 허가처분된 거래는 94.6%이며, 불허가처분은 5.4%에 불과함.
 - 불허가처분의 사유는 가격의 부적정이 0.2%, 이용목적의 부적합이 3.8%, 거래면적의 부적합이 1.4%로 나타나고 있음.

〈허가 및 불허가처분의 실태〉

	허 가 신 청	허 가	불 허 가
건 수	94,777	89,650	5,120
비 율 (%)	100	94.6	5.4

3. 토지거래허가제의 문제점

가. 허가구역의 과다지정과 장기화로 토지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

- 지가상승과 투기성행으로 규제구역을 계속 확대 함에 따라 허가를 받고 거래하여야 하는 지역이 전국토의 46%에 이르고 있음.
- 거래규제와 같은 직접적인 수단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규제구역의 지정이 일 반화됨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
- 특히 지정기간 만료시(3년)계속적인 투기의 발생을 우려하여 대부분 재지정함에 따라 임시적 조치가 상시화되고 있는 실정임.
- * 재지정현황 : 14,400km² 중 14,005km²(97%)가 재지정됨.

나. 거래규제수단의 다양화로 인한 중복규제

- 토지거래허가제 및 신고제에 의거 투기적 거래를 규제하면서 다른 법에서 그 법의 입 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목별로 다시 규제하고 있어 거래규제가 중복되고 있음.
 - 농지 :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제
 - 임야 : 산림법에 의한 임야매매증명제
 - 택지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법률에 의한 택지취득허가제
- 이와 같은 토지거래의 중복규제는 국민불편의 요소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행 정청의 과다한 행정수요를 유발하고 있음.

다. 가격심사제를 통한 거래가격의 통제 불가능

- 불허가처분이나 조세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거래금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향

이 있으나 실제 거래가격의 포착이 어려워 가격심사는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 이론적으로 볼 때 사인간의 거래는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하고, 당사자간 자유의사에 맡겨지기 때문에 가격규제를 하는 것은 모순임.
- 사인간의 거래는 허위가격을 기재하여 허가를 받고 있으나, 법인은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에 애로사항으로 되고 있음.
- 실수요의 심사기준이 구체성이 없고, Positive System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실수요자의 토지취득을 저해하고 있음.
 - 이용목적이 거주용, 농·축산·림·어업용, 주민의 복지편익시설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실수요자로 인정하고 있음.
 - 특히 농·축산·림·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행하는 토지취득은 허가구역 내 거주하는 농어민에게만 허용하므로 규제구역외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와 농, 임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토지취득이 봉쇄되어 1차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 국민은 정부가 구체적인 실수요자의 기준을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허가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하고 있음.
- 토지이용목적이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맞지 않는 경우 소요토지를 용도지역이 변경되기 전에 미리 취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산림보전 또는 경지지역 내 토지를 취득한 후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공장용지로 활용코자 하여도 현재의 국토이용계획에 부적합하여 토지취득을 불허함.
 - 이에 따라 용도지역이 개발용도로 변경된 후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여 공장을 설립하여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

라. 사후관리의 부실로 제도자체의 실효성을 저하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전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미이용토지를 유휴지로 결정하거나 선매할 수 있으나 당해 토지를 협의하여 매수도록 하고 있을 뿐 협의불성입시 실효성있는 강제수단이 없음.
 - 1992. 10 허가받은 54,210건에 대하여 사우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4.5%가 미이용 방치(1,897건)되거나 전매(558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무허가 토지거래 및 부정한 거래허가에 대하여 부과하는 벌금액(500만원 이하)이 토지가액에 비해 경미하여 허가제의 실효성 확보가 미흡

4. 개선방안

〈기본방향〉

- 허가 및 신고구역의 지정기준을 명백히 하고, 중복규제를 해소
- 허가기준을 합리화하여 실수요자의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 완화
- 신고 또는 허가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가. 거래규제구역 지정 및 규제방법의 개선

-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구역의 지정기준이 애매한 것을 구체화하여 꼭 필요한 지역만 허가구역으로 지정

	현 행	개 선
허 가 구 역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역
신 고 구 역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	현행과 동일

※ 지가상승율, 거래량증가, 개발사업비실시등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명시

- 토지에 관한 권리중 규제의 실익이 있는 소득권만을 규제

규제대상	현 행	개 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소유권에 한정

- 거래규제의 중복해소

- 임야의 경우 임야매매증명으로는 투기적인 거래에 대한 규제가 어려우므로 임야매매증명제 생략
- 농지의 경우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매매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방안을 농림수산부와 협의

나. 심사기준의 합리화

- 실효성이 없는 가격조사는 폐지(실거래가격의 포착이 사실상 불가능)
- 실수요자 조사기준을 보완하여 실제로 토지를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와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
 - 현 상황 유지 목적(자연환경보전)또는 공공시설이용 목적의 토지거래도 허용

- 공장설립용 토지는 관계법령에 의거 공장설립의 인·허가등을 받으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전이라도 토지취득을 허용

※ 용도지역 내의 행위제한이 negative system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공장설립이 가능한 토지가 대폭 확대됨.

다. 사후관리의 강화등으로 허가제의 실효성 확보

-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정기 또는 수시로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미이용토지는 과태료 부과(200만원)와 함께 조세증과, 선매등 조치
 - 미이용방치토지(2년 이상 방치) : 종합토지세 증과 (세율 : 5%)
 - 미이용전매토지 : 공공기관의 선매 및 양도소득세 증과(세율 : 75%)

※ 선매대상토지 확대

현 행	개 선
공공사업용에 한정	토지수급조정을 위한 비축용토지와 미이용전매토지 포함

- 유휴지제도를 개선하여 사후관리 강화

- 유휴지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 지도록 지정권을 위임
 - 현행 : 국토이용계획심의회(건설부 설치)심의, 시·도지사 지정
 - 개선 : 토지이용심사위원회(시·도 설치)심의, 시장·군수 결정
- 유휴지에 대한 개발,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동 계획서대로 이용하지 않은 때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매수
 - 공공용지로 필요한 토지는 협의불성립시 토지이용위원회 재결로 강제 매수

- 토지거래 허가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 허가, 신고제를 통한 투기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으로 되어있는 벌금형을 토지가액의 일정비율로 강화

구 분	현 行	개 선
허 가 위 반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년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액의 30/100이하 벌금
신 고 위 반	6월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	6월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액의 10/100이하 벌금